|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유관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제80호<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기업소득세 유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기업출장비중생명∙상해보험료지출세전공제문제기업직원이공무상출장으로교통수단에탑승하여발생하는생명∙상해보험료지출에대해,기업이과세소득액계산시이를공제하는것을허가한다.2. 기업 이전자산 소득세 처리 문제기업에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자산처분 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8]828호)제2조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이전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판매수입을 확정해야 한다.3. 시행시간본 공고는 2016년도 및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한다.<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자산처분 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8]828호) 제3조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국가세무총국2016년12월9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80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有关规定，现对企业所得税有关问题公告如下：　　一、关于企业差旅费中人身意外保险费支出税前扣除问题　　企业职工因公出差乘坐交通工具发生的人身意外保险费支出，准予企业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二、企业移送资产所得税处理问题　　企业发生《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处置资产所得税处理问题的通知》（国税函〔2008〕828号）第二条规定情形的，除另有规定外,应按照被移送资产的公允价值确定销售收入。　　三、施行时间　　本公告适用于2016年度及以后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处置资产所得税处理问题的通知》（国税函〔2008〕828号）第三条同时废止。　　特此公告。国家税务总局2016年12月9日　　　 　　 |